

식품유통공학과 대학원 학과 내규

2019년 7월 18일 신설
2023년 11월 15일 개정
2024년 11월 11일 개정

1. 입학전형

제1조 (평가기준 및 전형방법)

- ① 본교 대학원 입학전형 학칙 및 시행내규에 준하여 학과의 대학원 입학에 위한 평가기준을 운영한다.
- ② 식품유통공학과 대학원 입학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한다.
- ③ 서류심사는 ㉠대학졸업(예정)증명서, ㉡대학 및 대학원 성적, ㉢학업 및 연구계획서로 한다.
- ④ 면접심사는 ㉣학문에 대한 관심도, 열정, 성실성, ㉤전공에 대한 지식, ㉥학업 수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해외에 체류중인 지원자(외국인 학생 포함)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.

2. 학위청구 및 종합시험

제2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

- ①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대학에서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(SSCI, SCI, SCIE) 또는 국내등재학술지(KCI)에 논문 1편(공동연구발표 논문 포함)이상 발표한 자에게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.
- ②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인정하는 학술지는 「축산경영·유통경제학」 전공은 연구재단등재지 이상으로 한다.
- ③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과정에서 「식품위생안전」 전공의 경우에는 국제저명학술지 이상으로 한다.

제3조 (종합시험)

- ① 종합시험은 식품유통공학과 대학원 「축산경영·유통경제학」과 「식품 위생안전」 전공영역에 대한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.
- ② 종합시험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.
- ③ 각 과정별 종합시험의 응시과목수, 응시자격, 응시절차 및 합격 기준 등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.
- ④ 식품유통공학과 대학원 종합시험 학과내규는 2019년 2학기 종합시험부터 적용한다.

제4조 (시험과목)

- ① 종합시험 과목의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,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.
- ② 종합시험 과목은 해당 학기 응시자 현황을 바탕으로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정한다.

제5조 (응시자격)

- ①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(석사 16학점, 박사 24학점, 통합 40학점)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② 응시자는 응시신청과 함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- ③ 응시자격 확인 서류는 취득학점 확인원 등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다.
- ④ 논문제출기한 경과자가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추기 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단, 논문제출기한 경과자는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과정 6년 이내, 박사(통합)과정 10년 이내에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.

제6조 (응시절차)

- ① 종합시험은 매학기 첫째 주에 시행한다.
-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학과 종합 시험 일자의 2주일 전까지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 (시험위원)

- ① 학과장은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

원은 출제방향, 문항별배점,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출제한다.

- ② 해당 학기에 선정된 시험과목이 전임교원이 담당한 교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한 비전임교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 (출제방법)

- ①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기본으로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제9조 (고사시간)

- ① 학기당 선정된 종합시험 교과목의 시험장소와 시간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정하여 공고한다.

제10조 (합격인정 점수)

- ①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 모든 교과목이 합격될 경우에 최종합격으로 판정한다.
- ② 합격이 인정 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한 차례의 재시험을 시행한다.

제11조 (시험의 면제)

- ① 대학(원)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학원생은 종합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.
- ② 대학(원)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 대상자는 해당 학기에 재학생 내지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(연구등록급 납부완료자)이면서,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
가. 석사예약입학제 특별장학생

- 인문·사회 계열: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논문 1편

- 자연과학 계열: SCI(E)급 국제저명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

나. 석·박사통합과정 특별장학생

- 인문·사회 계열: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논문 2편

- 자연과학 계열: SCI(E)급 국제저명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

다. 4+1학석사연계과정생

- SCI(E)급 국제저명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

제12조 (시험결과보고)

- ① 학과장은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